

意匠登錄出願·圖面作成要領

<下>

文 秉 岩

<辨理士>

一承 前一

3. 平面을 表示하는 圖面

承前平面的인 物品을 表示하는 圖面은 各圖 同一縮尺으로 作成한 表面圖 및 裏面圖의 兩面 2圖를 1意匠圖로 한다.

(1) 平面的인 物品

- 織物 包裝紙
- 수건 賞狀
- 毛布 편지紙
- 보자기 비닐紙

이는 어느 程度 두께가 平面的인 것으로 取扱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어느 面이 凹凸모양이 있는 것은 側面圖 또는 斷面圖를 作成하여야 한다.

(2) 이면이 表面과 同一 또는 對稱일때나 無模樣인 경우에 省略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관련된 도면의 面稱號 右側에 括弧를 하여 그 뜻을 記載한다.

4. 其他의 圖面

(1) 正投影圖法에 의한 面圖만으로는 그 의장을 充分히 表現할 수가 없을 때에는 展開圖·斷面圖·切斷部 斷面圖·擴大圖·斜視圖 그밖에 遠近의 理解를 돕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使用상태를 나타낸 圖面 其他 參考圖를 作成하여야 한다.

◎ 展開圖

內側에도 의장의 重要部가 있는 단렸다 열렸다 하는 답배갑과 같은 物品에 있어서 外面의 모양만을 展開表現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즉 전개도를 添付하는 것이 의장을 보다 明確히 表現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개도의 表現方法은 전개한 그대로를 나타내고 正確히 전개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斷面圖

凹凸부의 형상등이 明確히 表現될 수 없는 경우, 組立住宅이나 엘리베이터등과 같이 內部の 형상, 모향이 意匠上 重要한 경우, 物품으로서 構造등을 明確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단면도의 表現方法은 切斷面에 平行斜線으로 表示하고 作圖方向을 화살표로 표시하여 符號를 붙인다. 着色圖面의 단면도에는 착색하지 아니하고 平行斜線으로 나타내도 무방하다.

◎ 切斷部 斷面圖

단면도로서는 복잡하게 되어 明確하게 의장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로서 표현방법은 단면도와 같고 절단면 이외에는 一切 나타내지 아니한다.

◎ 擴大圖

다른 도면의 축척으로서의 작아서 의장이 明確히 표현될 수 없는 경우 6면도의 도면의 축척보다 크게 그리지 아니하면 의장의 要部를 充分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擴大作成하여 作圖方向을 화살표로 表示한다.

◎ 斜視圖

복잡한 形象의 것으로서 6면도만으로는 그 의장을 잘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시도를 그려서 보다 의장의 표현이 明確하게 되는 경우로서 正投影圖法 이외의 圖法으로서 斜面으로 精確히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 參考圖

물품의 使用目的, 使用方法 등이 6면도나 의장의 說明만으로는 理解하기 어려운 의장의 경우로서 이의 표현방법은 自由이다. 參考圖의 種類는 使用狀態圖·分解圖·說明圖등이 있으며 參考圖와 權利請求의 關係에 있어서는 權利를 청구하는 것으로는 認定되지 아니한다.

5. 特殊한 意匠의 圖面表現

(1) 分離할 수 있는 物품으로서 結合된 상태만으로는 의장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합된 상태도 외에 분리된 상태 즉 그 物품의 各個의 構成部分에 있어서도 필요한 도면을 添加한다.

◎ 뚜껑과 本體, 茶잔과 그 받침등의 意匠

各各의 1組의 도면 및 결합된 상태 1조의 도면으로 표현함을 原則으로 한다.

◎ 雌雄이 있는 意匠

衣服의 袖(hook) 단추와 같은 물품으로서 각각 1 조의 도면 및 결합된 상태 1 조의 도면으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한다.

◎ 左右 1組로서 1意匠이 되는 것

장갑, 양말, 신발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바 의장의 설명란에 「左右對稱(同一)의 것 1組中 右側만을 표시함」이라고 明記한다.

◎ 트럼프와 같은 合成物의 意匠

의장의 설명란에 「트럼프 1組 53枚中 그 表面의 모양은 킁, 킁, 책, 조커를 除外한 기타 표면의 모양은 종래 사용되고 있는 모양으로서 이면의 모양은 1組共通의 모양이다」라고 명기한다. 기타의 경우에도 이에 準하여 설명을 明記한다.

◎ 積木 組木 등의 意匠

各片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상태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 積木이 이루어진 것과 그 수장상태를 圖示하여야 하며 組木인 때에도 조합된 도시만으로써 分解한 상태를 잘 알수 없는 경우에 그 각편을 참고도로서 도시하여야 한다. 構成片의 각각에 대해서는 사시도(사면도)로 代用하여도 무방하다.

◎ 組物의 意匠

각각의 것을 1 조의 도면에 표현한다.

6. 物品의 全部 또는 一部가 透明한 意匠

◎ 外周가 透明한 意匠

外周가 無色透明하고 무모양인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部分을 그대로 나타낸다.

◎ 外周의 外面이나 內面

또는 그 두께속의 어느 한곳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색채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앞면 또는 윗면의 모양, 색채만을 표시한다.

◎ 外周의 外面, 內面

또는 그 두께 속에 혹은 외주에 둘러 싸여져 있는 內面에 2 以上の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각면에 표시한다.

7. 色彩에 대한 意匠

◎ 색체에 대한 의장도면은 4 통 모두 同一한 색체로 채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색체가 黑白 또는 無色透明의 것중 어느 한 색체에 대한 경우에는 그 색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이 경우 의장설명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색체에 대한 의장도면은 4 통 모두 陽靑靑寫眞에

彩色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이 경우 형상의 外線을 濃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채색은 얼룩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용, 잉크, 색연필과 같은 것으로 채색하여서는 아니된다.

8. 寫眞으로 出願하는 경우

◎ 背景에 他物이 들어가면 아니된다.

◎ 정투상도법에 따라 各圖 同一縮尺으로 표현되도록 撮影하여야 한다. 다만, 大型機械등의 물품으로서 정투상도법에 의한 것과 같은 사진을 만들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시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라도 무방하다.

◎ 寫眞의 크기는 캐비넷 版以內로 하며 最小限度 6×6版으로 한다.

◎ 사진에 나타나는 물품은 印畫紙 全面에 가득차서 餘白이 없도록 하고 물품의 윤곽에 따라 切除한 사진은 아니된다.

◎ 형상 또는 모양이 明確히 표현된 사진이어야 하고 회미한 것, 초점이 맞지 않는 것 또는 反射光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없는 모양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아니된다.

◎ 사진은 가로 190 mm, 세로 268 mm의 크기의 뾰뾰한 종이에 붙이고 사진의 윤곽을 犯하지 않도록 契印을 한다.

◎ 사진은 접어서는 아니된다.

◎ 사진으로서 색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天然色寫眞으로 한다.

9. 본보기 또는 見本으로 出願하는 경우

◎ 도면을 대신하는 본보기 또는 見本은 가로 190mm 세로 268 mm의 크기의 뾰뾰한 종이에 뒷면도 붙수 있도록 上端만을 풀로 붙이거나 실로 꿰맨다. 이 경우 셀로판테이프나 스테플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前項의 경우 붙인 번이나 실의 향끝을 묶어 縫合紙를 붙이고 계인을 하되 實物에는 印影이나 봉합지의 침입이 없도록 한다.

◎ 도면을 대신하는 본보기 또는 見本은 脫落, 파손, 부패의 우려가 있고 保存上 不便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한다. 즉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用紙에서 용이하게 이탈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용지에 붙였을 경우 그 두께가 7 mm 이하의 것이어야 하고 크기는 가로 180 mm, 세로 220 m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얇은 포지 또는 지물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각 1 m 이하의 크기의 것으로 접어서 두께가 7 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完>